

검 토 보 고 서

2019. 9. 23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19. 9. 9.
- 회부일 : 2019. 9. 10. (의안번호 : 19 - 122)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,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 제로화 추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물품 제작·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제로화 및 구민 재활용 의식 함양을 고취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 개정(안 제2조제1항)
- 조례에서 정하는 구민의 대상 한정(안 제5조제1항)
-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·배포 근거 조항 신설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(안 제11조)
-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4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·배포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의 조문삭제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, 제6조(교육·홍보)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를 따라야 함에도,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제11조(준용규정)를 삭제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교육·홍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위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쓰레기문제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교육·홍보 관련 규정을

신설하는 것임으로 조기교육 효과가 있는 어린 시절부터 재활용 분리수거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안하기 등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